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-2491호

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실시(처분사전통지) 공시송달 공고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청문실시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을 등기우편 송달시도하였으나 조합 사업장폐쇄 및 대표자 연락두절, 수취인부재,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(공시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(대표자)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8월 28일
서울특별시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

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」 제82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

2. 청문 당사자(조합)

연번	인가번호	조합명	조합 소재지	대표자
1	서울특별시 제2011-19호	참소망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7, 2층	강병용
2	서울특별시 제2012-8호	서현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	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680	이영미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- (참소망, 서현)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정지
- (서현) 보건·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「의료법」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
 - ※ 「의료법」 위반 내용 : 정당한 사유없이 「의료법」 제40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(「의료법」 제64조 제1항 제5의2호)
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-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

5. 법적근거

- (참소망, 서현)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」 제82조 제1항 제4호
- (서현)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」 제82조 제1항 제5호

6. 청문실시

- 일 시 : 2025. 9. 25.(목) 14:00 ~ 16:00
- 장 소 : 서울시 서소문2청사 15층 회의실(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)
※ 출입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,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
- 기관명 :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(☎02-2133-5364, xhflddb328@seoul.go.kr)
- 주재자(소속, 성명, 직위) : 법무법인 주원 민관식 변호사

7. 공고기간 : 2025. 8. 28.(목) ~ 9. 11.(목)

〈청문시 유의사항〉

1. 귀 조합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3. 또한, 「행정절차법」 제22조제4항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(이 경우,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에 의견진술(청문)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의견란에 작성하여 2025. 9. 24.(수)까지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※ 우편주소 :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, 공정경제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업무 담당자 앞
4. 청문 진술을 위한 참석자(조합 대표자 또는 대리인)는 아래 필요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1) 참석자 신분증 및 단체인감증명서, 단체인감도장, 기타 청문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
 - 2) 대리인의 경우 사전에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 후 대리인 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(대리인 자격 입증서류) 지참 후 참석
5. 귀 조합은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6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경제과(담당자 ☎02-2133-536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	
의견제출 내용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	기타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